



재정부, 국가계약법·규칙 개정 입법예고

1000억 이상 PQ공사 대상 최저낙찰 시행

내년 1월부터 1천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 및 물품·용역조달 때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당초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또 78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 때 우선 국내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발주기관은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정부공사 등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이들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사원, 법제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1천억원 이상 PQ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는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에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관련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재정부는 정부조달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조달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다만, 보안성 및 정보화 기술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입찰 실시여부를 결정·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국내 입찰대상에만 적용기로 했다.

※ 국내 입찰대상 : 500만 SDR(78억원)미만의 공사, 13만 SDR(2억원)미만의 물품 및 용역 조달

1천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 최저가 낙찰제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는 1천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대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PQ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낙찰제로 전환한다. 또한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입찰에 시장기능을 제고한다.

※ PQ(Pre-Qualification) : 입찰 전에 미리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하여 통과된 자만 입찰에 참가도록 하는 제도로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이 그 대상이다.

최저낙찰제 대상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 의무화 및 보증금률 상향 조정

가격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아니라도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동 보증서 제출방식의 활성화를 꾀한다.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입찰 절차의 투명성 제고

매년도 초에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해 발주물량, 예산액 등이 명시된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한다. 이로써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들에게 조달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 조달참가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보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계약집행심의회를 발주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을 현행 6월~1년에서 1~2년으로 강화, 부패발생을 방지토록 한다.

또한 물품조달에 있어 입찰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의 대상품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을 재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것을 각 중앙관서장이 직접 정해 운용토록 하므로써 발주관서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수의계약 사유 중 비상재해 개념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 신속한 수해복구를 수행토록 지원한다.